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3 July 2018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Other Countries May Copy U.S.'s Minimum Offshore Income Tax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4, pg. 7\)](#)

OECD: 미국의 역외 무형자산소득 관련 과세권 행사에 대한 타국의 모방가능성 시사

OECD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온라인 기반 사업에 대한 세제 개선의 시도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소득에 대한 미국의 최저한세를 모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OECD 공격적조세회피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이하 “ATP”) 조직의 부서장인 John Peterson 은 옥스퍼드 대학의 기업 세무 학회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산과 관련되어 올해 초 도입된 해외 무형자산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 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scheme, 이하 “GILTI”)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John Peterson 은 지난 7월 2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여름 학회에서 이러한 국가들이 GILTI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디지털 기업의 조세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GILTI에서 정하고 있는 10%의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이 경제적 지적 재산권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 보유하려는 동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있는 미국주주의 GILTI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으로부터 발생된 순이익으로, 유형자산으로부터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음을 간주하고 유형자산의 일정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미국은 2017년 세법개정(Pub. L. No. 115-97)의 일환으로 GILTI를 도입하였습니다.

대형 디지털 기업의 조세 문제 (Big Tech Tax Trouble)

온라인 기반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가 창출한 가치로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은 전세계 모든 세무당국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입법 담당 의원들 사이에 Facebook과 같은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OECD는 2020년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9년에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부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기업에 대한 임시 과세 방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관점 (U.S. Company Focus)

디지털화된 경제에 대한 과세 논쟁은 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유럽 연합(EU)은 Facebook 및 Alphabet Inc.의 Google과 같은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 회사, eBay 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수익에 대한 임시 과세 방편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기업들은 그룹의 국제조세약정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ustralia: ATO continued focus on identifying high-risk transfer pricing arrangements

호주: 고위험 이전가격 약정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호주 국세청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은 2018년 과세 연도에 대한 국제거래 명세서(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이하 “IDS”)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 IDS 업데이트는 주제별 이전가격 위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개발(R&D) 약정

ATO는 IDS에 국외특수관계자 간 R&D 원가가산약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질의사항을 포함하여 용역제공시 발생하는 관련 R&D 비용 및

원가가산이윤(cost-plus margin)을 별도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TO는 호주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적용된 실제 이윤(Mark-up)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외 허브(Offshore hubs)

또한 2018년도 IDS에 Section C에 이전가격과 관련된 새로운 질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질의 사항(Question 28b)은 ATO의 실질적 준수 지침(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2017/1에 있는 작성내역(Schedule)이 납세자의 국외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 경비 및 수입에 대한 내용을 납세자가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논의사항이 해외 마케팅 허브 약정 측면에서만 관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구매, 판매 및 유통 기능을 포함한 기타 중앙 집중식 운영 모델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약정(Hybrid arrangements)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약정(hybrid mismatch arrangements)을 다루는 2018년도 조세법 개정안 (Tax Integrity and Other Measures 제 2호)의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는 두 가지 새로운 질의사항에 따라 모든 약정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공시

IDS 지침은 호주 개별기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외환거래공시 사항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올해는 IDS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 손익을 공개하도록 요구한지 2년째되는 해입니다.

기타 업데이트 사항

2018년 IDS의 기타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ction C – 해외법인에 대한 이자
- Section D – 과소 자본화(ATO 의 과소자본화 세액결정과 실질적 준수지침(Tax Determinations and Practical Compliance Guidance)을 예상)
- Section E – 금융 서비스 기업

IDS는 위험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납세자는 새로운 IDS 질의사항을 이해하고 적절한 공개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mazon Disputes IRS Appeal in \\$2 Billion Tax Cas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4, pg. 5\)](#)

아마존, 20억 달러의 조세 심판건에 대한 IRS의 항소에 대한 이의 제기

Amazon.com Inc. (이하 “아마존”)은 미국연방조세법원의 결정에 대한 IRS의 항소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일 Ninth Circuit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IRS는 2017년 아마존에게 20 억 달러 이상의 소득조정처분을 내렸으나 패소했던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RS는 아마존이 2억 3천 4백만 달러에 이르는 세액을 회피하며 룩셈부르크로 무형자산을 저 평가하여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년, 조세법원은 무형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IRS의 현금흐름할인법을 기각하고 아마존의 비교가능 제3자 방법에 대하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India: Guidance on confidentiality, appropriate us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인도: 국가별 보고서의 적절한 사용 및 비밀유지에 관한 지침

인도 직접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이하 “CBDT”)는 국가별보고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와 G20 국가는 2015년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에 관한 3단계 이전가격 문서화 표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BEPS Action Plan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보고서의 실행은 인도를 포함한 OECD BEPS 채택 국가들이 실행해야 하는 BEPS Action Plan의 표준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2016 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BEPS Action Plan 13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인도의 이전가격 규정에 통합기업보고서와 국가별 보고서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타 조세관할지역과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해 인도는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에 대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약 50여개 국가와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BEPS Action 13의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CBDT는 국가별보고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침서 No. 2/2018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서에는 국가별보고서에 담긴 정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감시, 관찰, 검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해당 정보가 국제 거래에 대한 자세한 이전가격 분석 및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

(2)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Hong Kong's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has finally arrived

홍콩의 이전가격법안 최종 타결

홍콩의 이전가격법안인 Inland Revenue (Amendment) (No. 6) Bill 2017 (이하 "BEPS Bill" 또는 "BEPS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BEPS 법안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8/19년 평가에서 소급 적용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BEPS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입법위원회에 의해 법안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주로 이용자들의 의견에 부응하여 초기 제안서에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조세 혜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충족 될 경우 국내거래는 이전가격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소규모 홍콩 기업들의 정상가격원칙 준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문서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BEPS법안의 개요(Overview of the BEPS Bill)

BEPS 법안은 2009년에 발행된 IRD의 Departmental Interpretation & Practice Note No. 46에 반영된 대로 정상가격원칙을 성문화하고자 합니다. BEPS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가격원칙 (The Arm's Length Principle)

BEPS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인 이전가격규정으로서 정상가격원칙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두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독립기업 간 체결된 거래와 차이가 발생하고 조세혜택을 가져오는 경우 IRD가 손익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 간 특수관계거래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가 본적적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됨
- 실제 세액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음
-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2. 문서화 의무 (Documentation Requirements)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은 최종 법안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홍콩법인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에 대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규모 검증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2. RPT* 규모 검증 (아래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a) 연매출 4 억 HKD (약 574 억 원)초과	a) 연간 2 억 2 천만 HKD (약 316 억 원)를 초과하는 재화거래 규모
b) 자산 총액 3 억 HKD (약 431 억 원)초과	b) 연간 1 억 1 천만 HKD (약 158 억 원)를 초과하는 금융 자산 / 무형자산의 양도 금액
c) 평균 임직원 수 100 명 초과	c) 연간 4 천 4 백만 HKD(약 63 억 원)를 초과하는 기타 거래

* 국내거래는 조건이 충족되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연결매출이 68 억 HKD(약 9,768 억 원)를 초과하는 그룹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무형자산-간주공급 (Intangibles - Deeming Provision)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에 개발, 보강, 유지, 보호 또는 개발(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or exploitation, 이하 “DEMPE”) 기능과 같은 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한 경우 15F에 따라 홍콩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DEMPE 기능의 관여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입법 의도가 합리적으로 정당화 되더라도, 현재 기술된 대로라면 15F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IRD는 어떤 IP로부터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BEPS 법안은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D에서 발행하는 부서별 해석서 및 실무자료(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에서만 제공될 것입니다. 납세자의 준비기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발효일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연도부터 12개월 동안 연기됩니다.

납세자는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세불확실성을 고려하여 IP 전략에 대한 이전가격 사항을 적절하게 문서화 해야 합니다.

4. 거래주식의 평가 (Valuation of Trading Stock)

15BA는 보유주식을 거래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변경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도변경시 시가(또는 정상가격)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IRD는 미실현 이익이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관행은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15BA 조항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법의 적용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기존 15C 조항은 홍콩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홍콩 납세자에게 거래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이전은 양도인의 원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의 귀속(Atribution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EPS 법안은 또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특정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전가격규정은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BEPS 법안은 수익이 어떻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은 고정사업장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취급하고 OECD에서 인정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IRD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IRD는 해당조항이 소득세 조건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홍콩원천의 이익만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이해 관계자, 특히 금융 기관의 우려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은 12 개월 동안 연기되며 2019년 4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평가연도에 적용됩니다.

6. 정상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

BEPS 법안은 정상가격 사전승인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APA 체제가 확립되면 홍콩은 납세자들이 더 많은 조세관할권과 쌍방 APA를 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IRD는 지금까지는 이용할 수 없었던 일방 APA 신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BEPS 법안은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APA 목적을 위한 이전가격 책정 방법론의 소급적용을 제공합니다. 물론, APA는 IRD와 다른 조세관할권과의 상호합의 대상이 됩니다.

7.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Penalties and Non-Compliance)

BEPS 법안은 해당 법안의 위반기준 및 과태료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기의 경우 형사 범죄뿐만 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목적상의 과태료는 과소 부과된 세액의 100 %에 달하는 행정적 처벌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별보고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다툼의 해결(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이전가격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각 조세관할권은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및 조세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툼 및 이중과세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BEPS 법안은 (i) 납세자가 관련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 또는 중재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거나 ii) IRD는 MAP 또는 중재 과정에서 관련 세무 당국과의 합의사항을 실행해야 함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BEPS 법안은 IRD가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세무 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제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납세자에게는 대응조정 적용 기한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기한은 다음 중 더 늦은 시기까지 연장됩니다.

- 외국납부세액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 또는
- IRO(즉, 6년)하에서의 평가 또는 추가 평가를 위한 기한의 만기

또한 납세자는 조정 후 3개월 이내에 IRD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9. 기타 고려 사항 (Other Concerns Raised)

초기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주요 고려사항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행정당국의 답변 및 최종입장
이전가격규정과 원천지국과세원칙 간의 상호작용	원천지국과세 원칙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DIPN에 제공될 것입니다.
소득세 및 재산세의 적용	해당 조세에는 이전가격원칙이 적용됩니다.
APA 비용	HKD500k(약 7 억 원)의 상한선으로 해당 법안에서 제안된 시간당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문서화 제출 필요 여부	IRD에 따르면 납세자는 요청시를 대비하여 문서화를 구비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 허용	그룹의 전반적인 세액부담(즉, 조세혜택)이 경감되었는지의 여부가 강조될 것입니다.
이중과세면제 - 비조세조약의 경우 익금불산입을 대체할 수 있는 세액 공제	비조세조약 지역에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